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5,531,547	12,765,946
일반회계	364,717,766	10,941,533
특별회계	60,813,781	1,824,413
공기업특별회계	37,343,700	1,120,311
사포지방산업단지	2,687,149	80,614
상수도사업	9,846,420	295,393
하수도사업	24,810,131	744,304
기타특별회계	23,470,081	704,102
의료급여기금	1,510,111	45,303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586,859	17,60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51,496	16,545
농공지구조성	8,576,764	257,303
중소기업육성기금	5,406,635	162,19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068,966	32,0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770,000	23,100
주택사업	884,000	26,520
기반시설	957,815	28,734
수질개선관리	3,157,435	94,723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706,36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